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박상혁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재진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유만희,
이성배, 임춘대, 홍국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시험 업무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액을 규정(안 제2조)
- 다.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라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)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문제 출제·심사·선정·채점·인쇄·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 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관계자일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세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 중인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근거로 지급되었던 시험 업무 수당을 상위법령¹⁾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(시험위원 등) 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